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32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6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
보건복지위원회(2012년 6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)

- 가.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,
- 나. 전문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부모가족 및 양육 미혼 모·부에게 양질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3. 1.1 ~ 2015.12.31)
- 위탁업무
 -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관리·운영
 - 한부모가족정보지원네트워크사업, 홍보 및 한부모인식개선사업
 - 후원사업, 자원봉사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
 - 한부모가족 생활문화 교육지원, 보육실 운영, 역량 강화, 취업지원
- 소요예산 : 610,117천원 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재위탁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(1) 동의안 제출 배경

-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, 위탁기간(2010.1.1~2012.12.31)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, 향후에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(2)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검토

-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, 경제적 어려움,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,

자녀교육 등이 장애가 되어 양육 및 보육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요청됨.

-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기존 저소득층 및 시설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다양한 형태의 개별 한부모가구의 특성에 맞는 접근방식을 통해 사례관리와 위기개입으로, 한부모가족 및 미혼양육모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, 탈빈곤화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.
-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「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」 제9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,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것임.
- 한부모가족의 경우 전담하여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고, 경제적인 빈곤과 자녀양육의 어려움, 사회적 편견 등으로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,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
- 특히 한부모가족의 욕구에 맞는 원스톱으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인적·물적 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부모가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.
그리하여, 한부모가족(미혼모·부 포함)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, 직업훈련 확대, 기술 습득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,
서울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,

나. 전문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부모가족 및 양육 미혼모·부에게 양질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98-5(구 영등포 수도사업소 2-3층)
- 시설규모 : 건물 818.94㎡
- 준공일자 : 1990. 7. 1
- 이용대상 :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·부자
- 위탁기간 : 3년 (2013. 1.1 ~ 2015.12.31)

○ 위탁업무

-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관리·운영
- 한부모가족정보지원네트워크사업, 홍보 및 한부모인식개선사업
- 후원사업, 자원봉사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
- 한부모가족 생활문화 교육지원, 보육실 운영, 역량 강화, 취업지원

○ 소요예산 : 610,117천원 (2012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재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 제9조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09. 2. 1 ~ 2009. 12. 31
(10개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)
- 2차 : 2010. 1. 1 ~ 2012. 12.31
(3년, 서울시 여성가족재단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 한부모센터로서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
- 市 직영시 급변하는 사회현상 및 가족형태변화에 따른 즉각적이고 유연성있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, 시기적절한 사업시행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(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)
 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④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
 - 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·운영 기준, 시설 종사자의 직종(職種)과 수(數) 및 자격기준,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

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(위탁운영)

-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(위탁운영)

- ①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위탁운영)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

1.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
2.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
3. 위탁기간
4.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

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○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 제9조(설치 및 기능)

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, 상담 등 지원사업
2.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
3.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4.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

나. 기 타

○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
(저출산대책담당관-7130, 2012.5.31)